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 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이사회	14명	5명	지방공기업법 62조

II. 법 제11조제1항제2호
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	법인·단체·기관명	공무수행사인(명) (대표자 및 실질적업무종사자)	위임·위탁규정(조항)
1	서현 회계법인	2명	지방공기업법 제66조(결산)